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 3

코로나19지원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

코로나19시기에도 이주민은 여전히 배제 또는 시혜의 대상

“이것은 인권문제도 차별도 아니다.”
 “외국인이 많으니까 코로나환자가 많은 것이라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지.”
 “공짜로 코로나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나”
 “이러니까 왜 귀화를 안했었나”
 “이정도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좀 조용히 살자.”

지난 3월 코로나 19 3차 유행이 시작되자 한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위 인용문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외국 국적 결혼이주여성에게 행정 당국자가 답한 내용들이다. 행정명령에 대해 각계의 항의가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명령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각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주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주한 노르웨이·스위스·영국 대사단은 행정명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 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다. 행정명령이 “차별적이고, 균형적이지 않고, 의학적 정당성도 없으며, 코로나19 감염 사례 감소라는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취소되었다.

행정명령에 대한 항의에 대응하는 일선 공무원의 답변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정책 기조와 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의 대상을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만으로 상상하고, 그에 따라 외국 국적자는 기본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중에 일부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시혜’적 차원일 뿐이며, 그 기준이 모호하다.

한국사회가 주로 포함하는 정책 대상은 소위 ‘다문화 가족’으로 한국인과 가족 관계를 형성한 집단이고, 대표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다. 정부의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은 한국인 세대주 중심으로 국제결혼가족을 포함하였고, 그에 따라 결혼이주민도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다는 지원정책에서조차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배제되었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사미게이코. 2021. “외국인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외국 국적 결혼 이주여성의
 충격”. (광주드림) 2021.3.31.,
[https://www.gjdream.com/
 news/](https://www.gjdream.com/news/)

재난 지원에서 비껴나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



2020년 3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었다. 이 적용 규칙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가 진행한 민간지원사업에 신청한 총 1,907 사례 중 결혼이주민으로 F-6 비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102명에 달했다.

이 중 결혼이주 남성의 경우가 4사례(스리랑카 2, 중국 1, 베트남 1), 여성은 98사례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40), 필리핀(23), 몽골(4), 일본(4), 우즈베키스탄(4), 태국(4), 캄보디아(3), 방글라데시(1), 중국(1)으로 베트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출신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1956년생부터 1998년생까지로 20대부터 60대에 모두 고루 분포되어 있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집단이 형성되어 온 역사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도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가족과의 동거 여부를 고려하면, 동거 가족이 없다고 표시한 8사례(현재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출신국에 자녀가 있었다)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까? 이 브리프에서는 일부를 소개하여 실태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안전하지 않은 가정: 가정폭력을 겪는 여성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문제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²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자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이주여성들은 코로나 19시기에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사례들은 그런 현실의 다양한 단면들을 알려준다.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베트남 출신 여성은 “큰 딸은 중 1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딸 둘과 3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남편과는 함께 살 수 없어 딸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2만원을 내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에 손님이 없어 쉬는 날이 더 많아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일본 출신 여성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폭력에 시달렸다. 시부모는 같이 살고 있고 시부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폭력을 제지하지는커녕 아들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고 한다. 딸이 둘 있는데, 심지어 큰 딸은 아빠로부터는 성추행을 당하고 할머니에게서는 폭행을 당해왔다. 10년이 넘도록 폭력을 감내하며 살았으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남편이 오히려 사귀고 있는 여성과의 관계를 당당히 드러내며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었다.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심해져 딸 둘을 데리고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과 아동성폭력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지만 지원받을 상황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혼자 두 가지 소송을 진행 중인 이 여성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 사례들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세대주’ 중심으로 지원한 정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주거나 거주 조건 자체가 선주민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음이 드러난다.

² 국가인권위원회, 2017.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 귀화 과정에 있는 이주여성



현행법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관계를 단절하게 된 (결혼)이주여성은 더 이상 혼인관계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한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체류비자를 연장받기도 하는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다면 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베트남 출신 여성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던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도 받은 적이 없다.”

고 했다. 전남편은 이 여성의 국적취득을 위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은 현재 틈틈이 사회통합이수제를 통해 국적취득을 준비중이다. 아들의 보호자인 본인이 외국인 신분이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많지 않다. 건강도 좋지 않아, 노동력을 많이 써야 하는 힘든 일은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찾은 일자리는 베트남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일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일자리가 끊겨 생계 유지가 막막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을 포함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3) 별거 중인 이주여성들

제주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베트남 출신 여성은 자녀가 둘 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 본인은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다. 남편의 자녀 둘은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이 여성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둘째의 출산을 반대하면서 관계가 나빠져 현재 별거”

하고 있다. 남편은 첫째 아들의 양육비는 지원하지만 둘째 딸의 양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를 벌기 위해 찜질방 내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식당이 주5일에서 주 2일로 운영을 줄였고,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 출신으로 아들 둘을 키우며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은 남편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이

“집에서 출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집에 오지 않고 생활비만 매달 송금하고 있다.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는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를 양육하며 돈도 벌어야 해서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를 초청했고, 어머니가 단기 비자(C-3-1)를 받아 한국에 체류하며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식 반찬을 만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알음알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어머니를 비롯한 3 사람의 가족을 챙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아들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한다는데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았는데,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기기가 집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지원 희망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신청하려 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 저소득 가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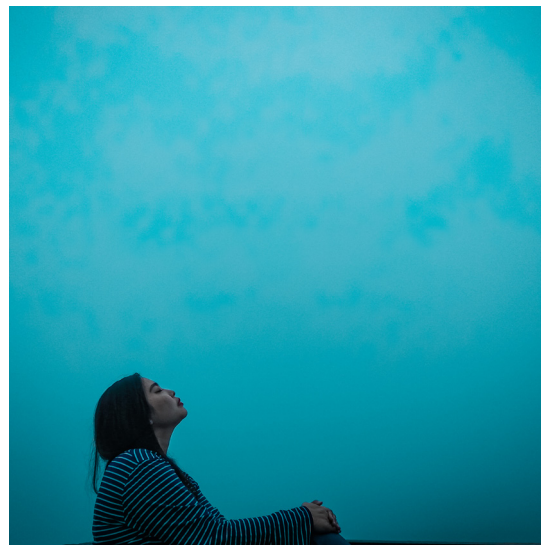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40대 중국출신 여성은 아이의 국적 취득 문제와 남편의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2011년에 태어난 아이가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회피행동”

을 해서 여성은 할 수 없이 중국으로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 5년이 지나서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등록을 했다. 아이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아버지인 남편이 출입국사무소에 동행해서 DNA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남편은 2016년에 실종되어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경찰에도 신고를 했으나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양파 밭일도 하고 조선소에서 일자리만 생기면 찾아다니며 무슨 일든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소개해주던 브로커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여성에게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연결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4) 이혼 후 한부모 가장이 된 여성들이 처한 현실



코로나19가 야기한 돌봄의 위기는 사실상 공교육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폐쇄하는 조치와 더불어 증폭되었다.

“특정 종교에 빠졌던 시어머니가 기도생활을 강요하는데다 남편의 폭력까지 더해져 이혼을 하

게 된 30대 중반의 베트남 출신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며

“미역 다듬는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

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2015년에 태어난 아이도 같이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다.

40대 초반의 베트남 출신 여성 역시 이혼한 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며 다섯 살된 딸과 살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을 맞추려고 보니 규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양육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연도 덧붙였다.

부산에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30대 여성은 3년전에 이혼을 하고 딸과 살고 있는데, 15살이 된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딸이 "엄마는 외국인이고 가난한 가정이 싫어서 죽고 싶다"는 글을 써서 학교 상담선생님과 상담까지 했던”

사연을 이야기하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현실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일인데, 그 사실로 인해 죽고 싶어하는 딸의 상황은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얼마나 차별하고 배제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정책 대상의 한계와 문제점

재난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한지붕 아래서 협력적으로 살아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역시 그렇다. 한국에서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재난 지원금의 세대주 지급 방식은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 한국남성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이다. 가족 안에서 권력을 갖기 어려운 외국인 여성이 남편의 선의의 배품을 바랄 수 밖에 없게 만든다. 한국남성과의 결혼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이혼·사별을 경험한 이주여성에게 매우 불합리한 방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그러하듯 한국 남성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성격을 충실히 따른다.

한국에는 다양한 이주민이 200만명 이상 살고 있다. 코로나 19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감염병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인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복지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연대와 공존, 호혜에 대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연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공동 프로젝트 결과다. 연재글에서 인용되는 대부분 사례의 출처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바보의 나눔]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생겨난 공적 지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재는 이 <지원사업>을 토대로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실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출처 표기. 문현아, 허오영숙. 2021.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 3: 코로나19지원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articleView.html?idxno=606842

2021 CTMS Migration Issues Brief No.03



www.ctms.or.kr
ctms.snu@gmail.com
@ctmssnu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동 307호

사전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은 불가하며, 본문 내용 등 활용 시에는 문현아, 허오영숙. 2021.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2: 코로나19시기 외국국적 국내거주 동포여성들의 노동 현실과 대책> 으로 출처를 표기해주세요.